

第36回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4年3月30日(水) 15時05分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鍾路區行政權限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鍾路區人事委員會費用實費辨償條例(案)
3. 서울特別市鍾路區國際化推進協議會條例(案)
4. 서울特別市鍾路區民의날條例(案)
5. 서울特別市鍾路區地方公社에대한區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6. 서울特別市鍾路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7. 서울特別市鍾路區쓰레기줄이기와資源再活用促進에 관한條例(案)
8. 서울特別市鍾路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案)

附議된案件

1. 서울特別市鍾路區行政權限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1面
2. 서울特別市鍾路區人事委員會費用實費辨償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1面
3. 서울特別市鍾路區國際化推進協議會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1面
4. 서울特別市鍾路區民의날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1面
5. 서울特別市鍾路區地方公社에대한區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1面
6. 서울特別市鍾路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1面
7. 서울特別市鍾路區쓰레기줄이기와資源再活用促進에 관한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1面
8. 서울特別市鍾路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1面

(15時05分 開議)

○副議長 芮相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議長님께서 급한 사유가 있어서 제가 대신해서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상 미숙하고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22명 중 출석의원 1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서울특별시 중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會議 진행은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받고 안건별로 심의하겠습니다.

1. 서울特別市鍾路區行政權限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2. 서울特別市鍾路區人事委員會費用實費辨償條例(案)(鍾路區廳長提出)
3. 서울特別市鍾路區國際化推進協議會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4. 서울特別市鍾路區民의날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5. 서울特別市鍾路區地方公社에대한區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6. 서울特別市鍾路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7. 서울特別市鍾路區쓰레기줄이기와資源再活用促進에 관한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8. 서울特別市鍾路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15時07分)

○副議長 芮相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로구 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인사위원회비용
 실비변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
 시종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민의날조례(안), 의사
 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사에대한
 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
 정 제6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
 울특별시종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종
 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
 다.

시민행정위원회 洪承台委員長은 나와서 심
 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行政委員長 洪承台 시민행정위원회 委
 員長 洪承台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芮相浩 副議長을 비롯한 동료의
 원 여러분! 이번 제36회 임시회에 상정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처리를 위해 지금
 이시간 까지도 수고를 많이해 주신데 대하
 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에 참
 석하여 장시간 진지하게 의안을 심사해 주
 신 시민행정위원 여러분과 우리 委員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신 구청 관계
 관들께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번 회기 중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은 조례제정안 5건과 개정안 3건으로 모두
 8건을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4건의 총무국 소관 의안
 중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
 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
 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의회사무국 직원과 보건소 직원에 대하
 여 구청장의 권한인 임용권의 일부 즉, 6
 급이하 의회사무국 직원의 전보권과 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 등의 권한을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고 보건소의 7급이하
 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등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인사제도의 미비점을 일부 개
 선 보완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임을 감안 원안가결 처리하였습
 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인사위원회비용실비
 변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
 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 제4613호로 1993년
 12월 27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법
 른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종로구 인사
 위원회 위원의 일비와 공무 여행시에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마련코
 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
 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
 니다.

본 조례(안)은 나날이 그 필요성이 요구
 되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여 종로구 역
 시 국제화 추진을 위한 민, 관, 산, 학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제 교류 협력에 관한
 긴밀한 협조 체제는 물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조례 제정안으로서 원안
 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의 중소기업이 무역교류하
 는데 증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이 앞으로 있을 것을 감안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민의날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로구민의 지역공동체 의
 식을 함양하고 지방자치 시대에 발맞춰 종
 로구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갖도록
 하기 위한 주민의 날로서 그날을 정한 원
 인은 태조 7년 광주에서 종을 주조하고
 운반하여 종루에 종을 건 날이 바로 5월
 9일임으로 그날 종로구민의 날로 정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으로서 서울특별시종로
 구지방공사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
 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94년 1월 10일 서
 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제3060호로
 서울특별시가 새로이 설립한 지방공사에 대
 하여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의거 서
 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종로구의 재
 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과세 면제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적법 타당한 조치임을 감안하여 또한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 3건의 의안 중 첫 번째는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안)에 따라 회계관직의 명칭 변경과 종로구 사무분장 규칙의 개정으로 소관 업무 관련 직위의 변경등에 따른 개정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두 안건의 보고에 앞서 먼저 여러 동료 의원들께 말씀드릴 사항은 이 두건의 조례 제정(안)은 우리 서울특별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우리 지구촌이 날로 심각해져만 가고 있으며 또한 환경문제와 인구증가에 따른 자원의 문제가 결부된 필요하고도 중요한 안건으로서 우리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들은 다같이 공통된 관심사안이었던 만큼 금번 3일의 회기 중 제2차 시민행정까지 연장하면서 개의하여 구청관계 국·과장을 참석시켜 심사숙고하는 가운데 많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했다는 것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로서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버려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재활용품의 교환 판매를 위한 매장을 설치 운영하도록 권고 또는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는 책무를 갖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 것입니다. 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에 적극 참여하는 시민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과 이의 추진을 위한 재활용 추진 협의회의 구성 그리고 자원재활용 권고 및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으로서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둘째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 서울특별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의 전문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새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 역시 쓰레기 분리 수거와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하여 배출하는 양에 따라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주요 내용으로 한 조례로서 대형 생활폐기물, 건축물폐기물류 그리고 기타 일반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금까지 해오던 쓰레기 처리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의식을 전환시킴으로써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 일반폐기물의 배출과 수집, 운반, 처리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이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징수 그리고 금년에 중구를 비롯한 성북구과 서초구의 시범실시에 이어 우리구도 향후 시행 예정인 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조례라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제정(안) 5건과 개정(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 照)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審査報告書

1994. 3. 28.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4년 3월 14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1994년 3월 14일
- 다. 상정일자: 제3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1994. 3.28):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총무국장 홍기화)

가.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인사의 공정성 및 합리성의 확보를 위하여 의회사무국직원 및 보건소 직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임용권 일부 권한 위임
-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의회내 전보권 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
 -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보임용해제 포함), 의원면직
 - 소속 공무원의 승급
- 보건소장에게 임용권 위임
- 7급이하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
 - 소속공무원의 승급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전문위원 장소수)

-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이 1993.12.27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質疑要旨

(질의자: 정명호 위원, 김현중 위원)

-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는 없는가?
- 사무국직원의 인사를 사무국장과 구청 총무국장이 했을 때의 차이점은?
- (답변자: 총무국장 홍기화)
-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보조기관이나 하급기관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급인 의장에게는 할 수 없음.
- 총무국장이 하던 보직인사를 사무국장이

직접하므로 자율권이 보장됨.

5. 檢討 要旨: 없음
6. 修正案의 要旨: 없음
7. 審査結果: 원안 가결
8. 少數意見의 要旨: 해당없음

서울특별시종로구인사위원회

비용실비변상조례(안)

審査報告書

1994. 3. 28.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4년 3월 14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1994년 3월 14일
- 다. 상정일자: 제3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1994. 3.28):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총무국장 홍기화)

가.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종로구지방공무원 인사의 공정성 및 합리성의 확보를 위하여 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전문위원 장소수)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일부 개정으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법관, 검사, 대학교수 등을 영입함으로써 인사위원회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관계 판례 등을 감안한 심도있는 심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관계규정에 적합한 실비 변상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

4. 質疑要旨

- (질의자: 현수한 위원, 박종식 위원, 정창희 위원, 김현중 위원)
- 인사에 관한 모든 것을 구청장이 안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하는지?
- 인사위원회 위원이 출장갈 일이 있는가?
-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출장갈 일이 없는데 조례에 비용 지출 규정을 만들면 불요불급한 출장을 하게 되지 않나?
- 연간 평균 인사위원회가 몇회나 개최되나?
- 통상적으로 2·3급 공무원이나 법관, 검사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적이 있나?
- 타 위원회에도 2급 공무원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하는 규정이 있나?
-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실질적인 처리를 하고 일반 위원들은 구색만 갖추게 되는 것이 아닌가?
- (답변자: 총무국장 홍기화)
-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별도 규정이 있음.
- 출장간 예는 아직까지 없으나 현지 출장하여 조사할 일이 있으므로 규정한 것임.
- 타지역(타부서)에 사례등도 조사하고 자료조사를 하게 될 경우가 있을 것에 대비하여 만든 조항임.
- 평균 월1회 정도 개최됨.
- 현재 인사위원회 위원을 구성중에 있음.
- 타 위원회는 모르겠음.
- 공무원의 입장에서 법조항의 해석을 위하여 권위 있는 대학교수의 견해를 필요로 하고 있음.

5. 檢討要旨: (토론자: 김현중 위원)

○원안 가결하였으면 좋겠음.

6. 修正案의 要旨: 없음

7. 審査結果: 원안 가결

8. 少數意見의 要旨: 해당없음.

서울특별시종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審査報告書

1994. 3. 28.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4년 3월 14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1994년 3월 14일
- 다. 상정일자: 제3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1994. 3.28):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총무국장 홍기화)

가. 제안이유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여 종로구의 국제화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종로구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설치기관: 시·도, 시·군·구

○기 능

- 종로구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
- 종로구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등과의 우호 증진사업 실시
- 세미나, 강연등을 통한 자치단체 교류협력사업 지원 등

○종로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구성

-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구청장이 민·관·산·학 대표자 위촉(유관행정기관, 민간단체, 상공, 법조, 학계, 예·체육인 등)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전문위원 장소 수)

○본 건은 개별의 위임 없이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서 조례 제정은 적법하나

- 제10조 수당 규정에서 여비등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토록 규정함을 실비 변상 차원에서는 타당하나
- 본 협의회 여비는 협의회 성격상 해외 여비의 지급이 예상되는 바 이럴 경우 예산의 부담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니 국내·국외 여비의 구분 등 검토가 필요함.

4. 質疑要旨

(질의자: 김현중 위원, 현수한 위원, 박종식 위원)

- 협의회 업무 범위가 없고 너무 막연하고 광범위 하지 않은가?
- 이러한 조례가 기초의회만 제정하는지, 아니면 광역 의회도 제정하는지?
- 협의회 위원중에 구의회 의원도 위촉될 수 있는지?

(답변자: 총무국장 홍기화)

- 국제화의 업무가 워낙 광범위 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는 앞으로의 사정에 맞춰서 하여야 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하였음.
- 광역 의회도 동시에 조례를 제정중임.
- 구의원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고, 위촉할 계획에 있음.

5. 討論 要旨(토론자: 김현중 위원, 정명호 위원, 나재암 위원)

- 국제 교류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함.
- 위원중에 구의회 의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에 삽입하자.
-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함.

6. 修正案의 要旨: 없음

7. 審査結果: 원안 가결

8. 少數意見의 要旨: 해당없음

서울특별시종로구민의날조례(안)

審査報告書

1994. 3. 28.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4년 3월 18

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1994년 3월 18일

다. 상정일자: 제3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1994.
3.28):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총무국장 홍기화)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여 종로구민의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며,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종로구민의 날을 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종로의 유래는 태조 7년(1398년) 광주에서 주조된 종을 종로로 운반하여 종루에 거는 행사가 4월 15일(양력 5월 9일)에서 유래되므로 5월 9일을 종로구민의 날로 제정.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전문위원 장 소 수)

- 5월 9일을 종로구민의 날로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 제1조 목적에서 “종로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을 설정하고”에 있어 “설정하고”란 용어의 도입을 ‘정하다, 제정하다, 설정하다’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적절한 표현 용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4. 質疑要旨

(질의자: 나재암 위원)

- 조례 문안중 구민의 날로 “설정”하고를 “정”하고로 하면 어떤가?

(답변자: 총무국장 홍기화)

- 같은 뜻으로 생각되므로 “정”하고도 좋다고 생각됨.

5. 討論要旨(토론자: 현수한 위원, 나재암 위원, 정명호 위원)

- “설정”보다는 “제정”이 옳지 않은가?
- “설정하고”를 “정하고”로 하는 것이 부드러운 표현이지 않은가?
- 원안대로 가결 동의함.

6. 修正案의 要旨: 없음

7. 審査結果: 원안 가결

8. 少數意見의 要旨: 해당없음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사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報告書

1994. 3. 28.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4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1994년 3월 18일
다. 상정일자: 제3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1994. 3.28):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재무국장 이래창)

가. 제안이유

○지방공기업법의규정에 의하여 신설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를 구세(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과세면제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이조례 시행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구세에 대하여는 이조례 시행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전문위원 장 소 수)

○이 조례 시행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구세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부칙
②항 규정은

○다소간의 소급효 규정으로 간주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법률불소급의 원
칙에 의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규정은 적법 타당함.

4. 質疑要旨

(질의자: 정명호 위원)

5. 討論 要旨: 없음

6. 修正案의 要旨: 없음

7. 審査結果: 원안 가결

8. 少數意見의 要旨: 해당없음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審査報告書

1994. 3. 28.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4년 3월 2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1994년 3월 21일
다. 상정일자: 제3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1994. 3.28):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시민국장 오병한)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개정('93. 9.23)으로 기금관리 담당공무원의 관직
변경과 서울특별시종로구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으로 인한 직명개정으로 이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기금출납 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
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함.
○기금출납 명령관은 산업과장에서 시민
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가스계장
에서 연료계장으로 개정함.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전문위원 장 소 수)

○적법 타당함.

4. 質疑要旨

(질의자: 金憲中委員)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변경
하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답변자: 시민국장 오병한)

○이는 단지 용어만 바뀔뿐 업무 내용은
같음.

5. 討論 要旨(토론자: 김현중 위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함.

6. 修正案의 要旨: 없음

7. 審査結果: 원안 가결

8. 少數意見의 要旨: 해당없음.

서울특별시종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

축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審査報告書

1994. 3. 29.

서울특별시 중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4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 중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1994년 2월 24일
- 다. 상정일자: 제36회 중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행정위원회(1994. 3.29):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시민국장 오병한)

- 가. 제안이유
 -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
 - 나. 주요골자
 - 구청장의 책무
 - 시행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시행
 - 장려금등의 지급
 - 재활용 추진협의회 구성
 - 과태료 부과·징수 및 과태료의 귀속등
 - 청문
 -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에 관한 사항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전문위원 장 소 수)
- 제12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를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하였을 때는 국고에 귀속된다는 조례 규정은
 - 모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과태료 부과징수)나 기타 규정에도 국고 귀속의 규정이 없음에도 이를 규정한 배경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 과태료의 부과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3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개별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부과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게 되는 바 이때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준의 완화 내지 홍보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質疑要旨

- (질의자: 나재암 위원, 정창희 위원, 현수한 위원, 박종식 위원, 김현중 위원)
- 이 조례의 대 주민 홍보 계획은?
- 재활용품 수집장소 선정 및 수거 계획은?
- 재활용품 분리수거로 부산에서 50% 정도 까지 쓰레기를 줄였다는데 우리구는 어느정도 예상하며, 이로인한 예산의 절감은?
- 재활용품 수거 계획은?
-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분리하여도 수거시 한곳에 섞어서 수거한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재활용품 창고가 우리구에 몇개나 있는가?
(답변자: 시민국장 오병한, 청소과장 김재형)
- 금년 1월부터 유인물을 각 가정에 배부하였고, 자생단체 모임, 지역신문에 게재 등으로 홍보하였음.
- 공동주택은 문제가 없으나, 단독주택은 공간이 부족하여 수집함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서 색깔별 비닐 봉지를 배부하여 가정내에서 분리하도록 시범적으로 일부에서 실시하고 있음.
- 현재의 재활용품 수거는 미미하나, 금년 목표는 18~20%까지로 늘릴 계획이고, 예산 절감액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음.
- 청소 차량 8대와 미화원 20명이 전담하여 하고 있음.
- 동담당 미화원이 한번에 수거하여 적환장에서 재분리 하는데 일부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음.
- 1개동에 1개씩 있음.

5. 討論 要旨

(토론자: 김현중 위원)

○원안대로 가결시켜 분리 수거를 정착시키자.

6. 修正案의 要旨: 없음

7. 審査結果: 원안 가결

8. 少數意見의 要旨

○이 조례의 제정이 시기적으로 이를것 같으니 좀더 연구하여 결정하자.

9. 其他 必要한 事項: 해당없음

서울특별시종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審査報告書

1994. 3. 29.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4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1994년 3월 18일

다. 상정일자: 제3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행정위원회(1994. 3.29):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시민국장 오병한)

가.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개정 및 서울특별시 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전문의 개정에 따라 법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지정하도록 함

—자치구 전역

—제외시 절차 규정

○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규정을 정함

—대형생활폐기물, 건축물폐채류 배출시 신고 의무화

—폐기물 종류, 성상별 보관시설, 용기설치 의무화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의 대항계약 내용 정함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준수 지침 정함

—인력·장비·시설 확보 기준 등

—지도·감독 의무 규정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정함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필요 사항을 정함

—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

—일반폐기물 배출방법...관급규격봉투 사용 배출

—규격봉투의 색깔, 크기 등

—규격봉투 관리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및 지도감독 등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전문위원 장소 수)

○본 사항 시행에는 상당한 행정력이 요구되며,

○폭 넓은 홍보나 세밀한 준비가 안 될 경우 주민과의 마찰이나 제도의 정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시범구역지정 규정을 폭넓게 활용하여 종량제 실시는 서서히 시행구역을 넓혀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음으로 자구 표현의 수정이 검토될 사항은 제5조 제3항, 제6조 제2항 후단의 시행규칙 자구 및 제28조 조제목과 후단의 시행규칙 자구는 제26조 제2항 규칙이란 자구 표현과 동일한 의미를 시행규칙과 규칙으로 달리 표현하였는바, 이를 규칙이란 표현으로 수정함이 타당함.

4. 質疑要旨

(질의자: 나재암 위원, 정창희 위원)

○일반폐기물의 종류는?

○봉제 제품등의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되나?

○대형 생활폐기물 수수료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

○쓰레기 10ℓ 봉투가 수거·운반등의 과정에서 파기될 염려는 없는가?

○일반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폐기 했을 때 어떻게 처리 하겠는가?

○가정용 봉투보다 사업장용 봉투가 더 싼 이유는 무엇인가?

○소각 가능한 것은 소각 하는 것이 쓰

레기 양을 줄이는 방안일텐데,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할 계획은?

(답변자: 시민국장 오병환)

- 생활폐기물, 건축물폐재류 등이 있음.
- 영세업체에서 배출되므로 별도의 대책을 세워서 처리하고 있음.
- 서울시 조례에 의거 기시행되고 있어서 시조례에 근거하여 정했음,
- 가정에서 수거시 압축 차량으로 하기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봄.
- 쓰레기를 무단 폐기하다 적발되면 최고 10만원 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무단으로 버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사업장용은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므로 조금 저렴하게 했고, 가정용은 분리수거 등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비쌈.
- 소각장을 설치하려면 쓰레기 수집장과 집진기등을 설치해야 하므로 넓은 면적이 필요한데, 부지확보와 유독가스, 분진등으로 인한 주변 주민의 민원등의 관계로 구체적인 계획은 없음.

5. 討論 要旨(토론자: 나재암 위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

6. 修正案의 要旨: 없음

7. 審査結果: 원안 가결

8. 少數意見의 要旨: 해당없음

○副議長 芮相浩 洪承台委員長!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議長!」하는 이 있음)

예. 金成贊議員! 질의하십시오.

○金成贊議員 金成贊議員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로 되어가지고 제4613호라고 해가지고 '93년 12월 27일에 따라 동법 제7조 나항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저희들은 법을 못 찾아와서 여기와서 묻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어느 분이 어

떻게 위촉하는 것인가 법으로 근거되는 위원이라고 했을 때 다른 조례 개정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때 구청장이 많이 위촉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인사위원회를 우리 구청 4급 우리 국장님들이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그렇습니다. 어떠한 인사위원회인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 범위내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잘모르겠지만 여행을 할때 2급 지방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그러면 여기 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주민이 선출하는 의원이 아니고 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 주된 대우는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방자치제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보다 저희들이 생각할때 우리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했을때 과연 2급 대우를 해주는 것인가

○副議長 芮相浩 金成贊議員님! 잠깐만 그것이 지금 의사일정 제2항에 관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1항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金成贊議員 미안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副議長 芮相浩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議員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포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로구인사위원회비용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金成贊議員! 나오셔서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贊議員 대단히 미안합니다. 회의 절차

도 모르고 자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이럴때 과연 이위원이 어떤 분으로 해서 위촉을 받은 자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내려오는 어떤 지정된 인물인가 이것도 사전에 저희들이 법을 여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법 개정 법률 제4613호라고 이렇게 나와있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못찾아보고 나와서 이것을 문의하는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芮相浩 金成贊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市民行政委員長 洪承台 洪承台議員입니다. 金成贊議員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이 부족하면 總務局長님이 대신 보충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金成贊議員님이 여행시 2급 공무원 대우를 하는 근거를 말씀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인사위원회에 위원 위촉이 법적으로 법관, 검사 또한 대학교수등으로 영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분을 모실때 모시기도 어렵지만 오신 다음에 여행을 만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게 된다면 그분의 사비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2급 대우비용을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느냐 또한 2급 공무원의 대우로서 여비를 드려도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관, 검사, 대학교수를 초빙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절차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을 모시려면 최소한도로 여비를 2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드려야 한다 해서 이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成贊議員 議員席에서 - 답변을 더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 위촉이랄까 추천을 어느 분이 어떻게 해서 하고 있는가 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하는데 위촉은 무엇인가 대통령령으로 어느 분 어느 분 되어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은 제가 이법을 못봐서 문

의하는 것입니다.)

○市民行政委員長 洪承台 그것은 總務局長이 보충답변해 주십시오.

○副議長 芮相浩 그러면 지금 시민행정위원장이 답변을 드렸습시다마는 실무적으로 잘 알고 있는 총무국장께서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總務局長 洪承台 總務局長입니다.

존경하는 芮相浩 副議長님! 그리고 區議員님들 앞에서 제가 답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金成贊議員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차례차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도 운영 규칙이라고 해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위원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원의 구성이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에서 7인 그래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 그리고 나머지 위원은 보건소장을 포함한 각국장들이 구성되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서 구청의 간부들로만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위원회의 기능이 뭐냐하면 6급이하 공무원에 관한 경징계 또 6급이하 공무원 승진 임용기준 사전 심의 및 임용전반에 대한 사항과 6급이하 공무원의 전보나 임용기준의 사전심의 이러한 제한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공무원들로만 구성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전문성의 부족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두분 정도의 외부인사를 모시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아마 각계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위원장 1인과 4인에서 6인의 위원을 구성하되 반드시 두분을 외부에서 영입을 하되 두분은 어떤 분을 영입하느냐 하면 법관이나 검사 또는 변호사 또는 부교수 이상과 초중고등학교 교장 이상의 분 또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한 이러한 분 중에서 두분을 모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사실

인사위원회에서 외부 출장을 하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인사위원회 하는 동안에 가본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경우에 인사위원들이 출장을 가실 경우 일비는 같습니다마는 출장을 가실 경우에는 이분들에 상응한 예우를 드려야 하지 않느냐 인사 위원이라도 여기 공무원인 국장급 이상은 여비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받습니다. 단 외부에서 영입한 위원은 거기에 상응한 대우를 해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결정한 것이 2급 상당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까마는 실제로 지금 지급하는 법정여비는 실제 가서 써보면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할때 우리가 실비 변상의 대우를 예우를 이분들에게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두분에 한해서 2급 이상의 대우를 해주어야 옳겠다하는 취지에서 이러한 내용을 삽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玄孝善議員 議員席에서 -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말이죠. 2급 공무원은 출장비가 얼마입니까?)

○總務局長 洪起和 거리에 따라서 다르고 일비하고 식비 숙박비가 있는데 그것이 전부 차이가 납니다. 그 금액을 지금 제가 답변 올릴 수는 없는데 여비 규정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실제로 현지에 가서 자려고 하면 넉넉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玄孝善議員 議員席에서 -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쓰고 있는 여비규정 자체가 불합리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여비 문제 말이죠. 아주 삭제 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여비 규정 문제 말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출장가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總務局長 洪起和 우리가 이것이 외부인사를 영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영입하는 분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우리가 우리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

니다. 이것을 저희가 정부에서 이러한 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각제의 의견을 다 듣고 그렇게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준칙을 내려줄때 2급 상당에 해당하는 대우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준칙으로 해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成贊議員 議員席에서 - 거기에서 몇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실 인사위원이라고 해가지고 2명을 법관이나 교수 부교수 이상으로 이렇게 초대를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양반들의 위치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여비규정을 2급에 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총무국장께서 위원장이 부구청장님 이시고 부위원장이 총무국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우리 총무국장은 4급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4급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위원이 되었을 때는 2급 대우를 받고 일반행정직으로 다른 공무에 가실 때는 4급으로 받고 기능이 안맞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두분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사전에 모든 것을 여기에 제시해 가지고 그런 절차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이래서 이렇구나 하는 것이 되는데 법관이라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한다는 것도 없었습니다. 법률 4613호라는 말은 나와 갖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7일에 따라 본법 제7조 사항에 대해서 위임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우리 議員들한테 이런 것 하나를 가지고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너무 議員들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냐 행정관청에서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들이 질의하니까 법관 2명으로 했고 이런 말씀하시는데 형평 기능이 맞지 않다 이것입니다.)

○總務局長 洪起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金議員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알겠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반드시 관계법규하고 그런 것을 전부 보강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함

니다. 그리고 아까 새로 개정된, 제가 현재 우리 인사 위원회가 그렇게 되었고 앞으로 구성될 인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副議長 芮相浩 總務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議長!」하는 이 있음)

예, 田永泰議員 나와서 질의하십시오.

○田永泰議員 田永泰議員입니다. 總務局長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 외에 각종 위원회가 한 20여 개가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존재하고 있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종로구인사위원회비용실비변상조례(안)을 보면 항상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열릴 때 본청에서 열리고 본청 인사위원회도 어디 회의실에서 열릴 것이고 이 근방에서 열릴텐데 그러면 당연히 여비, 수당은 우리가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 자기가 와서 수고하시지만 택시를 타고 오건 자기 차를 타고 오건 유류비라도 보태주는 데 왜 여기에다 공무라는 여행이라는 문구를 넣었느냐는 소립니다. 특별하게 외국 여행 갈 일이 있고 제주도 출장 갈 일 있고 그렇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 문구는 왜 공무, 여행이라는 것을 인사위원회만 특별하게 집어 넣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總務局長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 芮相浩 總務局長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洪起和 지금 田永泰議員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면 외부에서 영입된 위원에 대해서는 일비를 드립니다. 일비는 통상 저희가 3만원으로 현재 전부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경우에는 일비로서 전부 그외 또 무슨 교통비 명목으로 해서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사위원회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직원의 전보문제가 있습니다. 또 외지에서 발생한 사항으로 인해서 징계나 그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물론 가능하면 공무원이 가겠지만 공무원이 가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위원장이 외부 영입 인사에게 가서 이걸 판단해 주십시오.

역시 법률적인 지식이나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위원장이 결정하겠지만 그러한 경우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副議長 芮相浩 總務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중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議員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중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特別市鍾路區人事委員會費用實費辨償條例(案)은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特別市鍾路區國際化推進協議會條例(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議員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중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議員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중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特別市鍾路區國際化推進協議會條例(案)은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特別市鍾路區民의날條例(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議員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중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議員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特別市鍾路區民의 날條例(案)은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特別市鍾路區地方公社에 대한區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議員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議員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特別市鍾路區地方公社에 대한區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案)은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特別市鍾路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議員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議員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特別市鍾路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은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特別市鍾路區쓰레기줄이기와資源再活用促進에 관한條例(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議員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議長!」하는 이 있음)

예. 千相旭議員 나와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千相旭議員 千相旭議員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여덟 가지의 조례(안)을 심사하신다고 수고하신 洪承台 委員長님 이하 委員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본 議員이 질의하는 내용은 수고하신 委員長은 좀 쉬시고 구청 당국자가 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례(안) 내용에 보면 과태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專門委員의 검토 내용을 보면 3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 안전에 나오는 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는 10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봉투에 보면 그 조례 내용은 같은 금액이 없습니다마는 전본 봉투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 조례 내용은 비슷한데 300만원과 100만원의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경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태료에 대해서 말이죠. 과태료의 귀속이 구청에서 부과했을 때는 구청의 구세 수입으로 합니다마는 조례 내용을 보면 이것이 결국 이의가 제기되어서 송사로 번질 경우에 해당되는 과태료는 국고로 귀속이 되어 있는데 모법에는 이러한 것이 명시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기타 규정에도 없는 사항인데 굳이 국고에 귀속시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芮相浩 千相旭議員! 수고하셨습니다.

(「議長!」하는 이 있음)

일괄 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을 할까요? 그러면 나오세요. 田永泰議員!

○田永泰議員 田永泰議員입니다. 늘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행정 당국으로부터 가장 힘을 쓰고 있는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법적인 조치, 일관적인 수거 방법에 의한 홍보 이런 것이 지금까지 집행되고 활용되어 왔는데 그게 지금까지 시행된 것이 그렇게 홍보면에서나 실행면에서 역시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 않겠느냐 그것은 행정 당국의 어떤 일관성 있는 쓰레기 정책이 좀 미봉책이거나 미비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국내외적으로 어려울 때 자원 재활용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노력하는 중에 우리 동네에서도 우리 미화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거 이것을 보면 상당히 우리 집에서 누구 못지않게 종이 팩은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주로 쓰레기 재활용에 종이 팩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저도 주민의 대표되는 議員입니다마는 집에서 그렇게 성의있게 그것을 많이 나오는 것을 잘 보관하고 잘 수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눠 가지고 수거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어야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살기도 힘들고, 부부가 소위 말하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사람들,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들이 그냥 쓰레기하고 섞어서 통에 넣으면 그분들이 갖고 가서 뜯고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방법론은 각동에 1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 수거를 하는데 어떤 절대 물이 묻지 않고 썩지 않는 종이 팩이라든가 반드시 재활용의 가치가 있는 쓰레기는 어떻게 모집 장소가 건물이 아니더라도 비가 안 들어가는 곳을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우리 미화원들이 우리 창신 2동이나 제3지구 같은 경사진 동네는 그 양반들이 와서 한 달에 얼마씩 받고 수거를 해줍니다. 지금도 해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겹해서 해갈 때 매일 갖다가 좀 보관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그 양이 지금 1t이 나오면 최소한도 2t, 3t 정도는 최소한 더 수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우리 시민국장님은 청소과하고 좀더 그 방법에 대해서 너무 형식적이고 탁상공론적인 계획만 세우지 말고 실제로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아가서 좀더 지도 계몽을 하면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용이하게 더 많이 수거할 수 있고, 또 그것이 홍보가 잘 되어서 우리 국민들의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것도 원활하게 잘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본 의원이 구청 우리 시민국장님한테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국장님이 담당국장으로서 쓰레기 수거의 방법 그것을 과연 어떤 미래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홍보를 좀더 어떻게 잘 할 수 없는지 이

런 자세한 내용의 계획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副議長 芮相浩 田永泰議員! 수고하셨습니다.

(「議長!」하는 이 있음)

예. 金成贊議員 나와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成贊議員 다 끝나고 일문일답을 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같이 붙잡고 이렇게 자꾸 나와서 미안합니다. 아주 이번에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좋은 것을 우리 시에서 개발을 했다고 할까, 제가 1년 전에도 쓰레기기에 대해서 몇가지 사실 쓰레기 전문업체한테 행정 관청은 손을 떼야 된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나 하면 일례를 들어서 말하자면 전문 용역 업체는 인원 100명 가지고 하려면 행정에서 직영을 하는 직영업체는 인력이 200명이 든다는 그 말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해도 감독이나 이런 데의 소홀로 해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공무원이라고 해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사업으로 이문을 남기기 위한 대행업체에서는 열심히 일을 시키고 일하는 노력 대가를 미화원들한테 지불하기 때문에 그만큼 일하고도 대가를 받아 가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몇가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제4조 제2항에 보면 규정이 여기에 나와 있는 문구하고는 지금 법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91년도의 육법전서를 봤기 때문에, 제4조 제2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이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이 말이 제4조 제2항에는 전혀 제가 본 육법전서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또 그 후로 '91년도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런 조항이 있는지는 자세히 안 봤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알고 싶고, 제4조 제2항에 있는 배출자 및 산업폐기물을 파악하고 매립지 확보, 산업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한다는 그 문구가 되어 있는

결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15조, 이 조례로 해서는 제5조입니다.(일반폐기물 분리 보관 및 배출,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는 수집, 운반이 용이)이 문구가 제15조에 해당하지 않고 제15조에는 오수 정화 처리, 분뇨 정화조 처리등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7조도 제11조에 해당되는 말이 여기에 문구가 나와있고 사실 여기에 또 보시면 모든 조례를 갖다가 시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한다 이런 문구가 꼭 있어야 되는가 일례를 들어서 이 문구가 좋은 문구를 따 가지고 그냥 우리 조례로 제정을 해도 될텐데 시 조례에 제19조... 다음 순서입니까? 또 동문서답을 하고 있구만. 이것도 일반폐기물인데 산업폐기물은 없던데, 산업폐기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폐기물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왕 나왔으니까 하고 들어가죠. 있다가 일괄 답변하시고.....

이 조례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꼭 본청에서나 그 조례로 제정된 조례라 할지라도 좋은 점은 따 가지고 우리 구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고 사실 여기에 보면 제9조, 제8조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제9조, 제8조가 이 제9조는 폐기물 처리업의 지도 감독이고, 예를 들어서 제8조는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할 대행, [구청장은 일반폐기물을 관리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처리업자(이하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에게 해당하게 될 때는 대행 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여기에 구청장의 권한이라는 것이 상당한 것이 여기에 나와있는데 지금 대행업체를 정한다고 했을 때 문구에는 업자한테 이런 조례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입니까? 일례를 들어서 지금 현재 종로구에서 처리하고 있는 직영으로 하고 있는 지역도 좋은 업자가 있다고 했을 때는 계약을 해가지고 대행업자한테 넘겨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니까 아시는 대로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 芮相浩 金成贊議員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외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답변을 시 민국장님께서 일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 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吳炳漢 市民局長 吳炳漢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상 호 副議長님을 비롯한 여러 議員님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와 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심도있게, 어제는 6시간 동안 市民行政委員會에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洪承台 委員長님과 市民行政委員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千相旭議員님께서 서울특별시종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 제정안에 있어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이 300만원 이하라고 어떤 자료에는 있고 일반폐기물은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나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모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0조에 보면 이러한 과태료의 부과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행규칙에서 그 세부적인 위반사항을 정하고자 조례에는 정하지 않았습다. 왜 그런고 하니 과태료의 세부적인 징수 절차가 행위라든가 위반 범위라든가 이런 것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변동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과태료는 일반 부과권자인 구청장에게 귀속이 되는데 비송사건으로 될 때는 모법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왜 조례에서 국고에 귀속된다는 규정이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모법에서는, 모법에서도 마찬가지로 규정은 안 하고 있지만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당연히 법원의 판결에서 떨어지는 과태료는 당연히 국고에 귀속되도록 그렇게 상위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국고에 귀속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문을 만드는 겁니다. 부족한 답변이지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田永泰議員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와 분리수거라든가 재활용에 관해서 많은 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시민국장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절감을 하고 그동안 우리가 쓰레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너무나 소홀히 해서 사실 체계적이지 못 하고 비능률적인 면이 많았던 점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에, '93년 11월에 처음 정부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처음 제정이 되고 그래서 '93년 6월에 시행이 되면서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이 제정되고 아울러 서울시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운영된 것입니다.

田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모범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거라든가 분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까지는 어떠한 법의 근거 없이 하나의 지침이나 운영 방침에 따라 좌우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범인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러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구청장이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행규칙을 만들고 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러한 정부에서 법이 새로 제정되고 환경문제가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변화해서 심각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쓰레기나 청소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하였고 반상회보라든가 지역신문 등 전단을 사용해서 홍보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실상 우리 주민들과 대화할 때는 그런 홍보의 효과가 잘 파악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가 가장 홍보 효과가 뛰어난 TV홍보 같은 것도 요구를 해서 지난 1, 2월달에는 TV에서 많은 홍보가 있었던 것도 저희가 기억이 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연간 쓰레기 배출량이 16만5천t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약 450t의 쓰

레기가 나오는데 현재 저희들 직영 구역이, 직영과 대행 구역이 면적으로 한 직영의 면적이 70%가 되고 대행이 한 30%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경미화원들이 463명, 그 다음에 청소 장비 차량이 77대를 가지고 저희 직영 구역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되면 저희가 수집 방법에 대해서 田議員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고물상 등 수집상을 활용하는 방법, 청소원의 청소, 우리가 지금 저희들의 자체 계획으로는 3개동에 차량한 대와 청소원을 전담을 해서 재활용 쓰레기만 전담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사실적인 이러한 시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소원들이 각동에 한 20여 명씩 있는 지역 청소원들이 자기들이 지역 청소를 하면서 과외로 이런 병이라든가 폐지를 모아 가지고 이것을 동협하에 활용해서 쓰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수집 방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도 참고로 하고 그 다음에 부녀회라든가 환경봉사단 등 각 직능단체가 참여를 해야 효율적이라고 봐서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田議員님! 제가 부족한 답변 같지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成贊議員님께서 일반폐기물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직영과 대행의 문제점, 그 다음에 법률의 상이점 등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다음 일반폐기물관리조례 심의 때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成贊議員 議席에서 - 작년도에, 전년도에 대행업체가 47%고 직영이 53%를 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종로구에서.)

○市民局長 吳炳漢 면적은 그렇고, 아니 면적이 아니고 실제 실적은 쓰레기량으로 봐서는 대행이 현재 53%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청소원들이 47%를 하고 있습니다.

(○金成贊議員 議席에서 - 지금 말씀하

실 때는.)

○市民局長 吳炳漢 면적 비율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재 종로통은 대개 대행업자가 하고 있고 우리 창신동이라든가 어려운 여건에서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金成贊議員 議席에서 - '93년도 예산에 935t이 나온다고 제가 보고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현지에 가서 519t이, 차는 26대가 들어왔고 이것을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쓰레기량이 많이 줄었구만요. 1일 양이. 약 450t 나온다고 했죠? '93년도에는 935t이 나온다고 청소과에서 보고를 했기에 이렇게 양이 안 나온다. 金成贊議員이 현장에 가서 김포매립지까지 가서 컴퓨터에 나오는 자료를 전부 뽑아 왔고 그러니까 예산을 3분의 1을 삭감하라고 해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지금 말하는 것을 들으니까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450t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 쓰레기량이 줄었군요.)

○市民局長 吳炳漢 저희들이 쓰레기 줄이기를 매년 20%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 재활용 조례가 생기면 분리 배출을 하지 않는다거나 과대 포장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주의 경고를 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계속적으로 감량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金成贊議員 議席에서 - 그리고 지금 지구 지정을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죠?)

○市民局長 吳炳漢 그것은 일반폐기물관리조례 심사 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副議長 芮相浩 그러면 市民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없으시죠?

(「議長!」하는 이 있음)

예. 千相旭議員 나와서 질의하십시오.

○千相旭議員 보충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吳局長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중요한 사항들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절차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절차상에 우리 의회 승인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내용들을 시행규

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못되어서 형평의 원칙에서 맞지 않는 그러한 시행규칙이 나올지도 모르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도 각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4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왜 이렇게 긴박하게 중요한 지구 전체가 지금 오염되어 가고 있는 이런 중요한 조례를 긴박하게 제출했는지, 현재 이것을 재회부했을 경우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재회부했을 경우에 말이죠, 일정상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문제도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장려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제정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장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금액은 얼마이고 어떠한 근거에서 지급했는지 그것도 답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芮相浩 千相旭議員! 수고했습니다. 보충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吳炳漢 市民局長 吳炳漢입니다. 千相旭議員님의 보충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서울시의 폐기물관리조례에서도 마찬가지로인데 조례에서 세부적인, 담배꽂초를 버리면 얼마를 매기고 뭐 어떻게 하면, 반드시 봉지 얼마 정도를 썼을 때 분리수거의 판단을 500kg중에 300kg가 있을 때 이것은 분리수거가 안 될 걸로 판단한다든가 이런 세부적인 기준을 조례에 정할 때는 이게 조례에 규정도 많고 이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구민에게 사실상 우리가 체험하지 않고 정한 기준이 시민에게 불편을 줄 때는 그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서도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은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판단되는 사항으로 과태료의 최고 한도액이 300만원으로 법률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우선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회부를 할 경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하고 질의하셨는데 금년 현재 자원 재활용 추진을 위해서 분리수거를 지금 금년 1월 1일부터 꼭 해왔습니다. 그 근거는 물론 법이 이미 '93년도 6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에 근거를 두고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 조례 등 지금은 서울시 조례가 정해졌고 그리고 작년도에는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의, 그러니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는 폐기물관리법을 준용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어야 우리가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현재 우리가 각 동별로 책정한 보상금이라든가 우리가 시범적으로 3개동에 대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민 홍보 추진 등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구청에는 이미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활발히 운영되고, 저희 구청에서는 이게 제정이 늦어져 가지고 늦어진다면 지금 경쟁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는 한 10억이라는 보상금을 각 구별로 구에다 내려주려고 우수한 구에는 보상금을 크게 내리겠다는 그런 방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저희도 보다 자원이 절감되고 그 다음에 분리수거가 확산되는 대책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려금 지급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의 실적을 보면 장려금은 1,891만6천원이 나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려금은 작년도에는 일반폐기물법에 근거를 하고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각 동별로 협의회에 지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千相旭議員 장려금이 작년도에 1,890만원이 나갔고 금년도에 나간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조례로 제정되기 전에 지금 현재도 어떠한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말입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조례에 보면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조항이 [구청장이 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규칙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과태료를 부과한 측에서 비송사건으로 제기해서 확정되었을 때 판사가 판결할 때 이것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안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결이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물어봤던 것입니다.

○市民局長 吳炳漢 과태료 부과 근거가 300만원을 과태료 부과한다는 게 법률적인, 법 제40조에 근거하기 때문에.

○千相旭議員 그것이 맥락으로 이어지려면 조례에 삽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市民局長 吳炳漢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시행규칙에 세부적인 사항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폐기물관리조례도 이렇습니다. 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지만 일반폐기물도 담배꽂초, 휴지 등을 버리는 경우에는 1차 위반에는 2만5천원, 간이 보관기구 비닐봉지 보자기 등을 이용해서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는 5만원,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1차에는 10만원, 2차에는 어떠한 엄금해야 될 사항은 2차에는 15만원, 3차에는 30만원 이렇게 부과합니다. 그렇게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정착이 되면 과태료를 줄여나가고 또 어떠한 사항은 중대한 사항은 이것은 그 조항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를 많이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서 전부다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정합니다. 왜냐하면 법률에 그러한 기준이 없을 때는 시행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데요 그게 있을 때는.

○千相旭議員 제가 질문한 사항의 하나가 빠진 게 있는데 그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이 어떤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것을 질의했는데 그게 빠졌네요.

○市民局長 吳炳漢 시행규칙은 의회의 협의 없이 조례에 근거해서 구청장이 제정 공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이런 지역주민에게 혹시 불이익이 갈지도 모르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千相旭議員 그런데 입법기관이라고 하면 구에서는 이미 구의회가 입법기관이 아니겠습니까? 이 조례가 입법이라고 봤을 때 구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법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吳炳漢 아니, 그래서 그렇게 지금 서울시도 지금 과태료 부과 기준, 제가 말씀드린 일반폐기물조례는 서울시 조례인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이렇게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千相旭議員 그것이 4월 1일부터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과거와 같이 맹탕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모법의 뒷받침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인데 조례가 좀 미약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市民局長 吳炳漢 모법에 300만원 기준이 없다면 조례에서 당연히 상한 금액을 정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을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모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千相旭議員 모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가운데 이 좋은 조례를 갖다가 왜 이렇게 시일이 촉박하게 상정하게 되었느냐 거기에 대한 답도 없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서는 실시하고 있는다는데 우리는 왜.

○市民局長 吳炳漢 비슷합니다. 이게 지금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이고 일반폐기물관리 조례가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에 심의하실 일반폐기물관리조례가 지난주 3월 25일 서울시 조례가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부의를 했고 본 심의 안전인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는 법이 작년 6월에 시행이 되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만들어진 게 금년 말에 거의 되었고, 서울시 조례가 2월달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급하게 만든다고 했지만 저희들 구청에서 그게 정해지지 않는 이상

저희들이 안전을 발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副議長 芮相浩 市民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千議員님! 이해가 가셨죠?

그러면 보충 질의는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議員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종로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金成贊議員께서 질의하셨고, 또 다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죠.

(「議長!」하는 이 있음)

예. 朴禹信議員 나와서 질의하십시오.

○朴禹信議員 朴禹信議員입니다. 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을 시민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을 지금 조례로 해서 시행할 수 있는지 만약에 이게 시행을 못 하면 안 하느니만도 못 하거든요. 우리 나라 현재 법도 그렇습니다마는 뭐 만들어놓은 게 능수고 이의 시행하는 데는 그냥 물어두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폐기물 전체를 보면 어떤 홍보도 없이 그냥 시행을 한다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국민들이 마땅히 해야 된다는마는 이 일반폐기물에 대해서 상당한 갑작스런 구민한테 이걸 만들어 놓고 이것을 폐기물을 이대로 해라 할 경우 과연 이 조례가 사문이 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어떠한 복안으로 앞으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가, 그 복안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芮相浩 朴禹信議員!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은.

(「議長!」하는 이 있음)

예, 千相旭議員 나와서 질의하십시오.

○千相旭議員 千相旭議員입니다. 지금 朴禹信議員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조례가 추상적이라서 말입니다.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 배출하는 데 대해서 부과하는 수수료는 가정에 부과되는 수수료나 대형업소에 부과되는 수수료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의 배출량은 100대 1정도, 200대 1, 300대 1 정도 하여튼 숫자가 100대 1로 가산되고 있습니다. 음식점 주변에 있는 대형식당에는 하루 음식을 치르고 나면 쓰레기가 한 트럭이 나온다고 해요. 가정에서는 하루에 1kg 나올까 말까 한데 그런 데에서는 무려 4t, 5t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중요한 사항들이 조례에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식당이라든가 음식점 주변에 있는 그러한 식당에 대해서 엄청난 음식 찌꺼기 같은 것을 배출해서 공해를 유발시키고 또 우리 구세를 그야말로 낭비하는, 쓰레기는 다 치워주면서 그 수수료는 다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규칙에다 넣을 것인지 종량제 실시라는 게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 종량제 실시의 중요한 사항은 빠졌다는 것입니다. 빠지고 그 껍데기만 나열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그것을 통계를 어떻게 내서 수수료를 부과할 것인지 가령 그것을 일인당으로 볼 것인지 부피를 가지고 눈대중으로 할 것인지 그러한 것도 저희들이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만들 때 우리 의원들도 참여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국장님의 구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량제는 어떤 지역부터 실시할 것인지 종로구 전체가 일시에 실시될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실시될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활용 촉진 조례에는 과태료가 30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폐기물관리조례에 보면 뒤의 봉투 견본에 보면 100만원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 이하의 어떤 과태료 부과 기준이 어떠한 법적 근거

에서 나온 것인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芮相浩 千相旭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市民局長님!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吳炳漢 市民局長 吳炳漢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답변이 미흡해서 송구스럽습니다. 金成贊議員께서 질의하신 일반 폐기물관리조례에서 직영업자와 대행업자가 운영하고 있는데 직영 지역은 조례가 제정되면서 새로운 대행업자로 선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물으셨는데 현재 일반폐기물관리법이 서울시 조례에서 이 처리 대행업자는 이제까지는 서울시 조례에서 정해졌는데요 서울시 조례에서 업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행구역이 될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그러한 시설과 장비, 인력,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 대행업자가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대행구역을 운영한 결과로 보면 區廳長의 이름으로 해야 할 책무를 대행업자가 하고 수수료를 받아갔는데 사실 거기는 공식적인 사무실이지만 사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우선으로 해서 가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가능한한 청소라든가 복지시설 같은 것도 작은 정부를 지양하는 뜻에서 위탁을 줄여나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것이 정착이 안돼서 민원을 사는 예가 있어서 현재 반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대행업체에서 어려운 일을 회피하는 그런 점이 있고 해서 그러나 저희들이 공동주택같은 것은 그때그때 대행업자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대행구역을 늘려나가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成贊議員 議席에서 - 清掃課長님은 안계십니까?)

清掃課長이 교육을 갔습니다. 오늘부터 1박2일 교육연수를 갔습니다.

(○金成贊議員 議席에서 - 課長님이 없으시면 局長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

습니다. 우리 吳局長님께서 우리 구청장이 지금 서울시청소본부가 있지요? 서울시청소본부에서 이 제도를 각 국장한테 위임한 사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와 종로구가 연결된 지역 그 사이를 서울시장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와 연관된 지역을 청장께서 종로 1,2가동의 대행업체가 평상시 어려운 지역을 연결시켜 가지고 해달라 해가지고 직영업체는 대행업체로 전부다 전부가 되어야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지역 대행업체가 없다고 할 때에는 종로구가 보조를, 지원을 해주더라도 이것이 전문업체한테 넘어가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구가 100억을 뺏기고 있어요. 우리 구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100억을 뺏기고 있는데 지금 거의가 수익자 부담이 되고 종량제로 한다고 하면 자기가 버리는 쓰레기량만큼 자기가 운임을 냅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우선 종로구가 90%를 부담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나를 보니까 1,000원짜리를 버리는데 버리는 사람은 100원짜리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행업체가 한꺼번에 오늘, 내 일도 다 못하지만 서서히 차근차근해서 쓰레기 전문업체한테 이것이 이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기관이 생겨야 합니다. 수도사업본부처럼 쓰레기기관 예를 들어 지하철본부, 쓰레기본부 이렇게 해야 연간 100억을 뺏기고 있는 상태예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종로구청장은 우리 구 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켜져야 종로구에 이문이 많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 1년에 599명중 463명을 해가지고 하면 몇%가 됩니까? 그러나 직영하는 지역은 어려운 지역이고 고지대에다가 면적도 넓고 힘들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해를 하시고 이것이 차차 쓰레기 전문업체로 넘어가야지 청소행정에 매달려서 우리 예산을 뺏겨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局長님 말씀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상위법이란 바로 그겁니다. 풀뿌리 민주

주의를 해야지 그 지붕밑에서 우리 종로구가 어떻게 하면 더 잘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문이 많이 남도록 우리 구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중앙정부에서 쥐고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이것이 권력과 돈을 빨리 지방정부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많은 공고를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전문업체가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해주세요.)

○市民局長 吳炳漢 좋으신 말씀입니다. 쓰레기를 전문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기업체에 확대적용하는 것이 선진국의 추세이고 또 종로구에서도 그럴 방향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런 대행을 해줄만한 여건이 있는 지역에서는 과감하게 대행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金成贊議員님께서 법률 제4조 제2항 조문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폐기물관리법이 있구요 축산오수 및 폐기물에 관한 법률이 있고 또 비슷한 법률이 있습니다.

(○金成贊議員 議席에서 - 저는 폐기물관리법을 봤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자료로 폐기물 관리법을 봤는데 '91년도에 육법전서를 봤는데 그동안에 변동사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봤습니다.)

○市民局長 吳炳漢 다음은 朴禹信議員님께서 일반폐기물관리조례 운영이 너무 조급하게 시행돼서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것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게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입니다. 현재 이제까지는 쓰레기 처리, 수거 그 다음에 배출하는 방법들이 市民들한테 하루 아침에 종량제로 한다 또 비닐봉투를 나눠주고 여기에 담아서 버려야 한다 하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우리 서울시는 성북구청, 중구청 그 다음 송파구청 3개 구청에 2개동만 선정을 해가지고 각 구 2개동이니까 6개동만 우선 종량제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다음에 연말까지 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내년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자체적

으로 이걸 시범적으로 어느 동안 지정해서 운영을 할려고 했고 금년 3월초까지 무악동에는 분리수거에 관한 시범 운영을 정해가지고 현재 비닐봉투를 4개 종류별로 나누어 가지고 종이류, 병류, 캔류 그 다음에 철재류 해가지고 무상으로 해서 그걸 분리수거하는 방법으로 하고 왔습니다. 이걸 심도있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차질없이 이조례가 선포되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千相旭議員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폐기물관리조례에서 종량제가 있는데 이 종량제는 아까 첫번째 말씀하신 음식점 주변에서 다량으로 음식물 찌꺼기 등을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 업소는 다량 배출물 처리 업소로써 이 종량제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건 별도로 서울시 일반폐기물관리조례에서 이걸 다량 폐기물 업소에 대한 수수료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시조례에 근거해서 수거를 합니다. 저희는 가정용과 규모가 작은 산업용 이렇게 수수료를 징수를 합니다.

두번째는 종량제 실시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朴禹信議員님 질의 사항과 같아서 이해하신다면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번째 과태료는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폐기물은 100만원. 그건 저도 법률에 관한 것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견해로는 이걸 현재 이 내용이 종량제의 실시에 따라서 그냥 무단으로 담배꽂초를 버린다든가 조례에서 정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로 해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한다든가 이렇게 직접 서민생활과 관련되기 때문에 100만원 이하로 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芮相浩 市民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議員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은 市民行政委員會에서 심의보고한 원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6회 종로구의회 臨時會 閉會를 선포합니다.

(16時51分 散會)

○出席議員 17名

千 相 旭	玄 壽 漢	玄 孝 善
沈 載 得	李 萬 魯	李 炯 述
洪 承 台	羅 在 岩	丁 昌 熙
芮 相 浩	朴 禹 信	朴 勸 先
田 永 泰	林 臥 龍	金 憲 中
孫 光 一	金 成 贊	

○關係公務員

總 務 局 長	洪 起 和
市 民 局 長	吳 炳 漢

